

행정 명령

**주 계약에서 벤더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렴성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정 명령**

뉴욕주는 모든 산하 기관 및 관청을 통해 공공 건축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공급받기 위해 다양한 벤더, 공급업자, 서비스 업체, 그리고 기타 하청업자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가 세금이 청렴성이 부족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현행법을 준수할 수 없는 독립체 혹은 개인에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오직 책임감 있는 독립체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의 법과 공공정책은 주와의 계약에 입찰하려는 독립체에게 계약 수행의 시점에 필요한 재무 및 조직 능력, 법적 지위, 그리고 청렴성(독립체 및 당사자)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참여했던 정부 계약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왔기 **때문에**,

노동법(Labor Law) 8조와 9조의 위반으로, 의지를 가지고 혹은 의도적으로 일반적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Labor Law) 25조 B항(건설 업계 공정 경쟁법(Construction Industry Fair Play Act)) 및 노동법(Labor Law) 25조 C항(상업 물품 운송 업계 공정 경쟁법(Commercial Goods Transportation Industry Fair Play Act))의 위반의 경우, 48 위험화물수송규칙 세부조항(C.F.R. Subpart) 9-4에 준하여연방정부에 연방 계약 및 특정한 하부계약, 지원 및 특혜 등에서 제외된 것으로 등재된 경우, 형법(Penal Law) 200조(공무원이 연관된 뇌물 및 연관 위반(Bribery Involving Public Servants and Related Offenses))과 496조(정부 부패(Corrupting the Government)) 혹은 195.20조(정부 기만(Defrauding the Government))가 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 혹은 처벌 혹은 업무 중단 명령에 대한 최종 평가의 대상이거나 노동자 배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 26조와 52조 혹은 131조의 위반으로 경범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프로젝트의 소수자 또는 여성 참여 조건에 대해 사기 또는 의도적인 허위 진술을 하였거나 의지를 가지고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행법이 정한 조항을 위반한 어떠한 하청업체, 벤더, 피수혜자 등에 대해 주의 산하 기관 및 관청은 향후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벤더의 책임에 대한 주의 관심은 계약 선정 과정에서 끝나지 않으며 주의 산하 기관 및 관청은 하청업체와 벤더, 피수혜자가 계약 기간 동안 책임감있게 의무를 수행하고, 참가 제한 대상이거나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하청업체와 벤더, 피수혜자가 공공 구매에 입찰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로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주 독립체”란 (i)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3장, 세부조항 2-a에 의해 주지사가 행정 권한을 가지는 모든 기관 및 부서, (ii) 주지사가 의장(Chair)과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또는 이사회 의 최소 50 퍼센트를 임명하는 모든 공공 이익 단체, 공공 기관, 이사회, 커미션 등을 뜻합니다.
2. “계약”은 모든 계약, 임대, 보조금 등 유사한 법적 문서입니다.
3. 주 독립체는 현재 사용하는 벤더 책임 결정 과정을 활용하여 하기 요소와 관련된 부분을 바탕으로 입찰자들의 책임 여부를 평가하도록 지시받습니다. (1) 재무 및 조직 능력, (2) 법적 권한, (3) 청렴성, (4) 과거 실적. 게다가 주 독립체는 하청업자, 벤더, 혹은 피수혜자가 자격 제한과 관련된 법이 정한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지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만약 주 독립체가 하청업체, 벤더 혹은 피수혜자가 계약 기간 중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거나 더 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것, 혹은 법적 조항을 위반하여 제외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알아낸 경우, 주 독립체는 적용되는 바에 따라 (1) 분석, 평가, 청문, 혹은 조사를 시행하고, 이는 문서 검토와 하청업체, 벤더, 혹은 피수혜자와 그들의 대표자에 대한 질의를 포함한 인터뷰로 보충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2) 이러한 검토, 청문, 혹은 조사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5. 모든 주 독립체는 책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여겨지거나 향후 계약이나 보조금에 대한 입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하청업체, 벤더, 혹은 피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러한 하청업체, 벤더, 혹은 피수혜자의 명단을 일반사무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 웹사이트에 5일 이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일반사무국(OGS)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이러한 하청업자, 벤더, 혹은 피수혜자의 이름, 날짜, 결정을 내린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일반사무국(OGS)가 결정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일반사무국(OGS)은 책임 미달 및 제외 결정 명단을 일반사무국(OGS)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외된 하청업자, 벤더, 혹은 피수혜자의 이름은 일반사무국(OGS) 웹사이트에 이러한 제외를 정한 관련 법적 조항에 따른 기간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경우에, 일반사무국(OGS)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책임 미달 및 제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전달받거나 일반사무국(OGS)가 정한 방식으로 주지사의 카운슬이 면제가 승인받기까지 결정된 사항은 명단에 계속 기재됩니다.

7. 모든 주 독립체와 주의 승인을 받은 감독관들은 반드시 책임, 청렴성 혹은 현재와 미래의 구매에 대한 하청업체와 벤더, 피수혜자들의 제외를 확실히 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 독립체들의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8. 승인된 면제를 선택하거나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거나 주 독립체의 어떠한 커미셔너, 기관, 부서의 장, 혹은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해, 책임 미달이거나 제외 대상, 혹은 다른 이유로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하청업체, 벤더, 피수혜자는 공무원 또는/혹은 이사회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올버니 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